##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 <b>1</b> 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어	] 관한	특례를	규정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	실서의	확립에	이바지학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 1. <u>「형법」</u>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u>제242</u>조(음행매개), <u>제243</u>조(음화반포등), <u>제244</u>조(음화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 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 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 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u>제289조</u>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 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 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 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 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u>제289조</u>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 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 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u>제289조</u>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u>제291조</u> <u>제1항</u>의 미수범 및 <u>제</u> 292조 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3. <u>「형법」</u>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u>제297조(</u>강간), <u>제297조의2(</u>유사강간), <u>제298조(</u>강제추행), <u>제299조(</u>준강간, 준강제추행), <u>제300조(</u>미수범), <u>제301조(</u>강간등 상해ㆍ치상), <u>제301조의2(</u>강간등 살인ㆍ치사), <u>제302조(</u>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u>제303조(</u>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u>제305조(</u>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4. <u>「형법」</u>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5. 이 법 <u>제3조(</u>특수강도강간 등)부터 <u>제15조(</u>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